

제259회 임시회
2007. 3.18(수)

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자치위원회
전문위원 연기봉

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7년 4월 9일

○ 회부일자 : 2007년 4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수를 대폭 증원하고 위원자격을 명확히 하며, 턴키¹⁾·대안입찰²⁾에 따른 별도의 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
- 그 밖에 참석위원의 수당 및 설계심의수수료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의 정비 (안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)
- 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120인 이내를 250인 이내로 확대
 - 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
 - 설계심의의 사안에 따라 별도의 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- 1) 턴키(일괄입찰)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필요한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·시공 일괄입찰을 말한다.
- 2) 대안입찰)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의 공사입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한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원안과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·신기술·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원안의 가격보다 낮은 공사로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.

- 나. 위원회의 기능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(2006. 12. 29개정)에 따라 정비 (안 제10조)
- 다. 사전기술검토에 따른 수당을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(안 제15조)
- 라. 건설공사 설계심의에 따른 수수료 징수 관련 산출근거 및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(안 제15조의2)

5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기능을 확대하여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, 사안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.

가. 조례의 제명 변경

- 조례 제명을 “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하고 있음. 이는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함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명의 부합성에 맞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되며

나. 위원회 구성

- 안 제2조제1항 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하고,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본청의 5급이상 공무원,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,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

이상인 자,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체화하였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위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위해 적절하다고 여겨짐.

- 다만, 위원 수를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할 시 충분한 대상자가 있는지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함.

다. 수당 및 여비 등

- 안 제15조제1항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방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고 하였는데, 단서 내용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 상 명기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.

라. 수수료의 면제

- 안 제15조의2제3항의 도 및 도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이는 세입수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세입부서와 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.